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46

발의연월일: 2021. 4. 16.

발 의 자:조오섭·강은미·송갑석

문진석 • 이학영 • 윤영덕

최종윤 • 민형배 • 이형석

양향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·활용을 위해 시장·군수 등이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·도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지원 역할을하고 있지만, 빈집정비계획을 광역적으로 조정하거나 일관적이고 지역 균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직접 수립할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,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

빈집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⑧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제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·군수등은 빈집정비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 며.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 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 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 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⑤ ~ ⑦ (생 략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⑧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

	변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
	시장・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
	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u>⑧</u>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